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9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」제29조 및 대신대학교 학칙 제61조의2에 의거하여 대신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결정한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위원회 제 규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
2.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일시, 장소,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제8조(심사청구 등)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“특수교육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신청할 경우 관련 기관(대학 등)의 장은 2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(대학 등)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(별지 1호 서식)를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2호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9조(서면의결)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교직원이나 전문가, 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부서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·학부(과)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서식]

(앞 면)

심 사 청 구 서

① 사 건				
② 청구인	성명		성별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소속			
③ 피 청 구 인				
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내용				
⑤ 재심청구의취지				
⑥ 재심청구의이유				
⑦ 기타입증자료				
⑧ 근 거 법 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			

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

1. 심사청구서 작성요령

① 사 건 명: ○○ 처분 취소 청구

② 피청구인: 처분권자를 말함

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: 년 월 일자 ○○ 처분

④ 심사청구의 취지: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○○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

⑤ 심사청구의 이유: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

⑥ 기타 입증자료: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

※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

2. 심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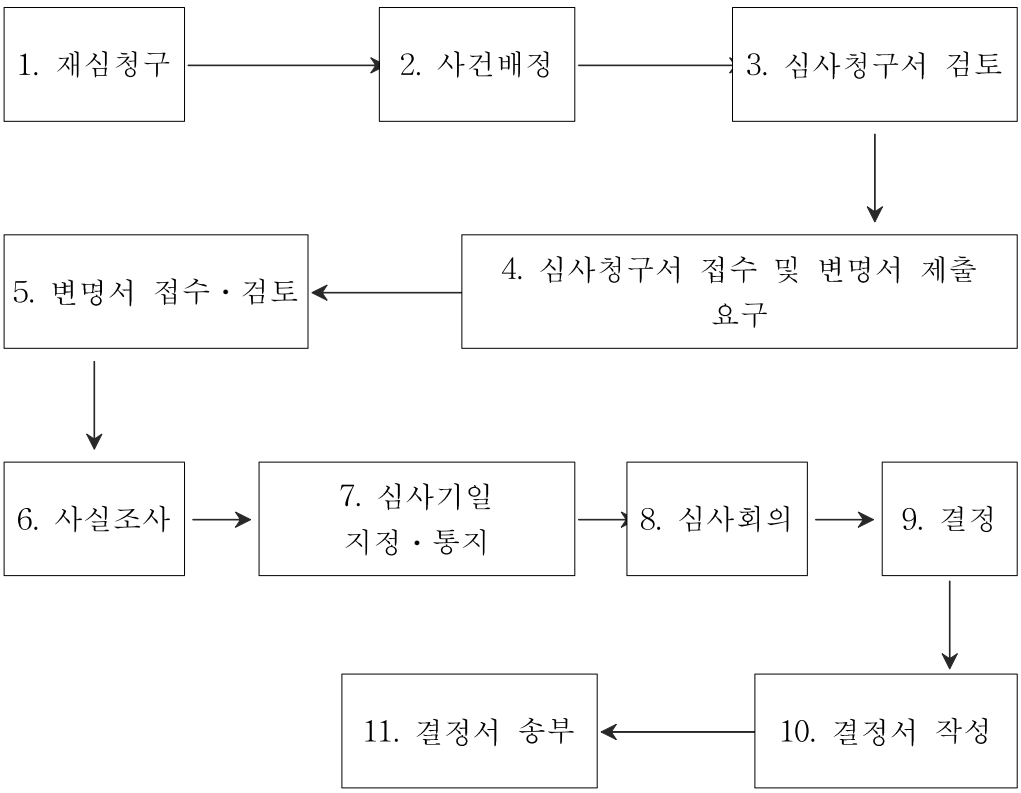

[별지 2호서식]

심 사 결 과 통 지 서

① 사 건				
② 청구인	성명		성별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소속			
③ 피 청 구 인				
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				
⑤ 심사 결과				
⑥ 근 거 법 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			

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(서명 또는 인)

청구인 귀하